도봉역 한양수자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 38756호(2008, 11, 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632-7번지 일대

■ 공급규모: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 아파트 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아파트 일반공급 73세대 (도봉시장 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3자녀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단위 : m², 원)
		Tellalalala			세			공 급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 택 형		공 급 면 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세 대 당 대지지분	성 급 세대수
		(1202/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지하주차장)	71727	네시시正	게네ㅜ
	22102-01	2008001023 (01)	109.69(A)	84.46	25,23	109,69	44.79 (40.99)	154,48	25.64	17
민	22102-02	2008001023 (02)	109.83(B)	84,46	25,37	109,83	44.79 (40.99)	154,62	25,64	3
영	22102-03	2008001023 (03)	109.62(C)	84.46	25,16	109,62	44.79 (40.99)	154,41	25,64	17
주	22102-04	2008001023 (04)	109.85(E)	84,99	24,86	109,85	45.08 (41,25)	154,93	25,80	20
택	22102-05	2008001023	147.32	114,62	32,70	147,32	60.79	208,11	34,81	12

	22102-06		(06)	15	1.36	116,43 34,93			151,36		(56,51)	213,	213,12		4	
			세대당 분양가격(원								중 5	급			잔 금	
주택형	층별 구분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 계	계 약 금 (계약시)	1회 (09.02.		2회 (09.06.25)	3회 (09.10.26)	4회 (10.02,25)	5회 (10.06.25)	6회 (10.10.25)	잔 금 (입주지정일)	
109.6	9 최고가	17	211,181,738	190,818,262	-	402,000,000	40,200,000	40,200,0	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A)	최저가	7 "	211,101,730	144,818,262	-	356,000,000	35,600,000	35,600,0	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109.8	3 최고가	3	211,181,738	191,818,262	-	403,000,000	40,300,000	40,300,0	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B)	최저가	7 °	211,101,730	168,818,262	-	380,000,000	38,000,000	38,000,0	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109.6	2 최고가	17	211,181,738	190,818,262	-	402,000,000	40,200,000	40,200,0	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C)	최저가	7 "	211,101,730	144,818,262	-	356,000,000	35,600,000	35,600,0	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109.8	5 최고가	20	200,537,270	175,462,730	-	376,000,000	37,600,000	37,600,0	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E)	최저가	7 20	200,537,270	142,462,730	-	343,000,000	34,300,000	34,300,0	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147.0	최고가	가 40	1 40	277 004 124	219,214,424	21,921,442	519,000,000	51,900,000	51,900,0	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147.3	최저가	12	277,864,134	178,305,333	17,830,533	474,000,000	47,400,000	47,400,0	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151.3	6 -	4	296,795,732	214,731,153	21,473,115	533,000,000	53,300,000	53,300,0	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 상기 공급금액의 함독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들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 3 의거)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인.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인.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흥별, 함별, 개방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처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비량.

 상기 공급금액에는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흥별, 함별, 개방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자용적 86㎡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주민광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정 및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모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상기 공급급액에 포함되어 있음.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ን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간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산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봉.

 소수점이라 단수 조정으로 통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비용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인전등기시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비용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인전등기시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장신검색 결과 당청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에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전신검색 결과 당청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에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전신검색 결과 당청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구리 제요요로 구장에 와기 납부할 수 있으며, 입사사용会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건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건금을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은 당취 주택의 건축공쟁이 전체공사비(부가메임비를 제안한다)의 50% 이상이 무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활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인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쟁이 30% 이상이어야 함)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주택으로 공급평형별 3%를 특별 공급함.

■ 반귀니 화장옥셔 고근근애

_ =1 -0	85 0867						(E	
주택형(m²)	안방 / 드레스룸	침 실 1	침 실 2	침 실 3	거 실	주방/식당	계	비고
109.69(A)	1,100,000	1,100,000	1,100,000	-	4,400,000	5,500,000	13,200,000	
109.83(B)	1,100,000	1,100,000	1,100,000	-	3,300,000	5,500,000	12,100,000	
109.62(C)	1,100,000	1,100,000	1,100,000	-	4,400,000	5,500,000	13,200,000	
109.85(E)	1,100,000	2,200,000	1,100,000	-	4,400,000	3,300,000	12,100,000	
147.32	3,300,000	2,200,000	1,100,000	1,100,000	5,500,000	6,600,000	19,800,000	
151,36	2,200,000	1,100,000	2,200,000	-	5,500,000	8,800,000	19,800,000	
. 바크니 8자고니	ll rrte 고나비요/ㅂ7	ᄓᄑᆙᄓᄼᄋᄱᅒᅚᄔ	I - 베타그애 이 크 바=	ii I 용자고나에 mla	고내용으 브하다	세		

클로드 국용소시에 따른 소시에는 전 등에 되었다. 전에 표기 에이라는 포를 모르기 국용소시에 따른 소시에는 전 포스키에서 제외되어 보다 되었다. 한 바리니화장 공사비(보기가) 첫세 포함는 화장으로 위해 기조석(화학모의 미석회 간사비용과 추가석회학모 증가비용이 정사되 금액인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9조 제6항 (2세대)] (단위 : ㎡, 세대)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신청자격 거 주 구 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전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서울특	별시 및 경기도	2008, 11, 29	당사 7	견본주택 / 10:00~14:0	0 2008, 11, 29 / 5	2008, 11, 29 / 당사 견본주택 / 15:00	
주 택 형(m²)	109.69(A)	109.8	33(B)	109.62(C)	109.850	(E)	147.32	151.36	Л	
서울특별시 거주자	-			-	1		-	-	1	
경기도 거주자				-	1		-	-	1	

- 주택형별 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 O 신청자격 •주백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1, 25) 현재 수도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주백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1, 25) 현재 수도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중 구성하고 있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료서 최초 입주자요점공고일2008. 11. 25) 현재 수는겐서울특별시 안찬편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체존에는의 세대원세대장보 통합한 세대을 제대장보 주민통료보여에 통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료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분양가산한체 적용주력에 당첨된 자는 재당점 세한가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청억에급기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업이 신청 가능할 (는 분양가산한체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점광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망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3개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목발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안정하며 일반공급 당점은 무효처리함. 3개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구비서류 구 비 사 항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ı		· 최소 합부사보업공보실(2006, II, 23) 언제 구부백 제대부 합당시ਜ(신불당/기부당은 또는 신북출신다내생당은, 기다 구부백사람들 합당이는 사류 당/
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ı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ı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ı	HOLLIELLI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ı	본인신청시	않는 경우에 한학
ı	(배우자포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하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래 해당자에 한학)
ı		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ı		② 미혼ㆍ이혼ㆍ사별ㆍ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ı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ı		성명 및 관계에 대하 표기를 유청하여 받급 받기 바람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재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이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의 인검증명세용도주택궁급신청 위임용)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는 국내가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점수장소에 비치)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어떤 자녀를 부엉하는 경우 : 자녀인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주론개충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중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중해야함.

 상기 제중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됐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랑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005, 7, 1일 주민등록법 시행구경 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소분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자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우선순위 배점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고				
8 1	3 # 7	용매염	기 준	점수	u ±				
	계	100							
미성년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자녀수	자녀	40	3자녀	35	· 시마(168이 포함/는 14구시포함6포를 전세 한 20세 미란한 8구한 포함				
(1)	영 · 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8.44	10	1명	5	· 8유지는 압구시오업공고를 전세 한 6세 비한의 사다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VIII	173(2)	10	2세대	5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	무주택기간(3)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 11C 81 11 - 11 - C8/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10년 이상	20					
		20	5년 이상~10년 미만	15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20	1년 이상~5년 미만	10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1	44 - 1-1	_	i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처리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2. 불반증당 보최호 압주자모집공고일(2008, 11, 25)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통꼬) 및 외국인 포함] 사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인 지역에서 청약에점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에금 에치금액으로 중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중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에처금 에치금액으로 중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중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에처금

- 으로 함박 가능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먼적은 "전용면격"을 기준으로 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무한해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점수는 당취자발표일에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여, 건 이상 청약 신청활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창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자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체한을 받을 수 있음.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전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구분	순 위	주 택 형 (전용면적)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 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가정체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장안자 본인 배우자 포함, 보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안 60세 미만 격계층배우자 작계 존속 포함 · 작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본 · 추청대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장인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본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작계준속(배우자 작계 존속포함) · 작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본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정제 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남숙의 대상자로 입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또 면 60세이상 작계준속이 소유한 주배은 신청자리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안정되나, 2주택 이성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정 역동됨 상적자는 가정체계추점제 선택 정상이 불가하면, 가장제 낙장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민	1순위	85m²이하	· 청약부급에 가입하여 간심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m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참약대급 여러기계약 이상인 분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第주택은행)의 재평자하여 가입하였거나 당, 5,22이전 국민주택 참약부급 가입자당 참약자식 1순위자당서 최초입자자당원교 전함까지 참약에금으로 전환한 분 건물관적 85m이하 또는 102m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참석에금(최초입주자 모급하고 전별자기 참약자회에서 참약에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참약부금에 가입하여 참약자격 1순위가 되지 본		2008, 12, 1, (월)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 행	•일시: 2008, 12, 9 •장소: 당사 견본주택 •문화일보 게재
영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참약에급에 기일하여 소년이 경과한 보 가입자 - 청약부급에 기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참억에급 여치급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대인 경과한 분 (전용단격 86㎡ 초과주택에 환함) - '청약자육에 기입하여 간단이 경과된 1순위 지각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안정금액이 지역별 창약 예급 여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일주자도입하고 전일까지 해당 참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소위 참약제한 대상자: 참약예금 또는 창약부급에 기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항약되가(소유)로 청약가(능)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 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본(주목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www.apt2you.com) - KB모바일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08:30 ~ 18:00	문화일보 게서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택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참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85m²이하	- 충약부터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기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m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에급 에서금액 이상인 분 - 청약자유료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소속자유료서 납입간성금액이 56m이하 수밖에 청약가능한 청약에급 예시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일자자 모습과고일 전일까지 해당 창약에금으로 전환한 분		2008. 12. 2. (화)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 12, 3, (수)	• 접수장소 - 수협중앙회 전국 본·지점 • 접수시간: 09:30 ~ 17:0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재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포함 등 자기미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청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악센터(www.api2you.com) → 청악센터 당청자조회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선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당청사실 조회 조회기준일 압력 공인인증서 조회 조회 ※ 청악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악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악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최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악지격을 대조한 후 청악신청내용과 청악지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악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악신청은 인터넷 청악이 원칙이며 노악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악접수는 불가함 [노악자·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창악관련에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간(전용면적 기준) 85㎡초과 102㎡이라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악관련에금 가입자의 경우 85㎡이라 민영주택 청악신청이 가능함.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악예금청인부금은 납인간정금액이 지역별 85㎡이라 청악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악저축에서 청악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악예금 예치금액으로 보건함(50억구)
- 산창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산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산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한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악자축에서 청악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07. 9 .(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정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m² 초과						
가 점 제	75%	50%						
추 첨 제	25%	50%						

- 가정체 입자자 선정병법: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신청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청약가점함목 및 점수: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정체에서 털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가정체에서 털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점수 입목은 청약자 책임(급하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전형복)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중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nt2vou.com) 국민은행(www.khstar.com)에서 유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가 점 항 목	가점상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 주민등록등본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 건물등기부등본,						
① 무주택 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구구역 기단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1						
		7년 이상 ~ 8년 미만	16			\neg						
		0명	5	4명	25							
2	35	35	35	35	25	25	25	1명	10	5명	30	- 주민등록등본
부양 가족수					2명	15	6명이상	35	- 가 족 관계증명서			
		3명	20			1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01ETI (0151141 -10111						
입주자 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청약통장 (인터넷 창약시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자동으로 계산됨)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1						

○ 가전하모변 저용기주

두가막기다 작용가요? 인우자모임되고일 한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우 (주택이 광유기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우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나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세네를 이루고 쓰는 세네요도 구국을 고유하지 아니아에서 한다. 일주자모전과고일 항재 60제국이당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기

- 일주자도집광고일 한째 60채급이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야 "소형" 자가주택"이라 한다! 많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자가 주택을 처분하여 우부때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의 처분 후 계속하여 우주택지인 기간을 함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자료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약으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체급이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산청하는 재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자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일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처분인 이전에 가격이 약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일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도 날에 공시된 주택공사가격에 따르며 일주자모집과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되었어 의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오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구주택기간은 일주자자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일주자자로 기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안한 경우에는 호색동본에 혼안신끄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신한다. 이 경우 입주자자축 기업자 또는 배우자가 주목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지가 된 발경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광양가증의 인정 전용기주

마이크에 모르는 아마이트 보안가(조슨 인구하기로) 현재 인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동료표상에 등재된 세대위배우자 · 작계조속(배우자의 작계조속을 포함하다) · 작계비속(미호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앙가족은 입주시도라공고일 현재 일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통제된 세대원배우자, 국제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례내속(이론)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시명한 경우에는 이론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음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통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앙가족으로 본다.
 임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는 입주자저축 가입재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임주자모집공고의 함께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앙가족으로 본다.
 임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기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망가족으로 본다.
 임주자저축 가입자가 작용기준
 임주지저축 가입기간 작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 입구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O 세대원 주택소유에 때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작계존속(배우자 작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작계존속(배우자 작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작계존속의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신정됨.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특별공급(3자녀 무주택세대주)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함

일반당급 공 통 - 충범, 동범, 항범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점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충벌, 동범, 항범 구분없이 주력형별로 사물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점수결과 알반 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중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O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지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수협중앙회	본 · 지점 방문청약
이용대경	KB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MBank 전용휴대폰 중 WIPI폰 기종만 이용 가능)	-
люны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 접속 → 청약센타 → 주택청약신청
이용방법 및 절차	KB 모바일 청약	SKT : MBank 접속 → KBStarnet → 모바일 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 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전화 ARS	• 전화 1588-9999 (서비스번호 : 702번)	-

O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 창구신청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국토해양부령 제477호(2005,11,17공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청약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세1 · 2순위: 청약통장 기입은행 비치, 3순위: 수협중암회 비치) · 청약에급, 부금통장 (1 ·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안점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영 • 원인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종료: 주민등록하起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가소신고중, 외국인은 외국인동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영업점 창구 청약자에 한함)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기간: 당첨자 발표일 역명업체(2008, 12, 10)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환불장소 : 청안접수한 수협중앙회 본 · 지점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구대서류 : ① 주택공리신청 접수(영수)중 (당청자는 원본 및 사본 제출) ② 주민동록중 ③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 분

특별공급	- 당사 건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주점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특범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린 경우 일반감금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철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지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일반공급	 금융결제원 컴퓨터 임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소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우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천제로 압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는 무직위로 결정함

(※ 돈 시비스는 생각산생사의 편의도로를 위한 쿠기시비스도 생확한 궁삼어쿠는 필표생소 중에서 제확한이어 구시기 마랍니다.)				
구	분	국 민 은 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최근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08, 12, 9 ~ 2008, 12, 18 (10일간)	2008, 12, 9 ~ 2008, 12, 18 (10일간)	
TJAI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 (ARS)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 1369 (서비스코드 : 5#)	
(ARO)	이용기간	2008, 12, 9 ~ 2008, 12, 18 (10일간)	2008, 12, 9 ~ 2008, 12, 18 (10일간)	
KB모바일	이용방법	・SKT : MBank 접속 → M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당첨확인	-	
	이용기간	2008, 12, 9 ~ 2008, 12, 18 (10일간)	_	
휴대폰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 주택청약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08, 12, 9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08, 12, 9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게크세크 첫 게크며 납판				
대 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고	
당당첨자	2008,12,15 ~ 2008,12,17 (3일간, 10:00~16:30)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0-4번지)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전신점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각제공당당청까지에 한하여 계약을 제결하고, 부적각자 통보받은 경우 부적자가 아너들 증명할 수 있는 수지 제출하여 적각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취결함, 제약체결 이루라도 전건점색결과 부적각자로 만명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자 일방에 의하여 제약을 취소함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042-01-102340	•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예 금 주 도봉시장 정비사업조합		도봉시장 정비사업조합			
	자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수험중앙회 본·지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하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1 4/40				
구	분	구 비 사 항			
공	uKo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소개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역에 대한 소명 서류 - 건축물 등기부동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기소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구구덕자임을 중점하는 서류 - 소형·자기주택임을 중점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중명원 등)			
제 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이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검증명세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상기 제종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2005, 7. 1, 주민동록진시병자의 계정으로 주단용표표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건물) 용노는 경우성 보시면 용노늘 기산으로 함.
주택배에 등 처분 시설은 건물들기부 등보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보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배에 등 처분 시설은 건물들기부 등보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보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자인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신점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건(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시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점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병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경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전계준비속배우자 작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본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진계준비속대우자 작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조람이 전망 : 것부터 보다를 보고 함께 모함 보다를 보여 [편기 소개 조람! (조란에 가장 보기 되어 보조함으로 기 이는 변화경우도 공략이 되는 기록 기공 보기 조람! (조란에 가장 기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검색대상: 신청자다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통회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통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통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상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차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통기부 등본: 통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차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삼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주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제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문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난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액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신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속인의 구장한 경을 실수에는 기수한 것으로 분화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대상속인의 구장한 경을 심수에 기수한 것으로 분화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감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동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자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준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카이즈통씨보였지가 보안을 모점으로 주말을 작성되어 있는 모든 함께 보험되었다. 물부받은 남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앙을 목적으로 주택을 간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그러워 소우리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용인들 얻어 선활한 수약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에 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작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말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펼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하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호 가목 2]
• 건녕전적 80㎡이하이며, 공사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용자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자가주택 보유가건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 장기간보우특례)
• [현재 * 소형자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로 3고일 기준으로 * 소형자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 * 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악됨 때리서 우주택자이며 중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IC에, '소양사/우역 소유사 업수사보업 광고열 기순으로 소영사/우역 1호 또는 I에내방을 IU인 이성 계속하여 모유한 경우 - 전세소영· 서/우역을 IU인비만 모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됩[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중전 무주택 기간은 포현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중전에 소령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자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안내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광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가례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불가지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 창노한 내용에 발표한 보완부가도 중 세인경에는 계약시작 부리노도 아내, 마장근중을하시에서 중 계약시 시간에 파인 승규는 메를로 가진 됩니다. 마기노는데 마기 네가지는 데 아프로 납부하시한다.(미남시 연체로 가산됨)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호수 분양대공 중 계약금층 본양금액의 10%) 납입 후 총 분양금액의 50% 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시유(대출 가능여부 사전 미확인 등을 포함하여)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사업주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회차별 약정금액은 본인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예정월 : 2011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함. 사전점검대상 : 도정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점검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입주자사전점검운영요령"에 따름.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보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취의 분양보증을 독한 아파트임

보 중 기 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사용검사 포함) 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영보종합 건축사 사무소

보 증 금 액 (원) 건축 / 기계 / 전기

ı	소망 / 동신 / 토목		,,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550.000.000운

부가세 별도

· 주락공급신청서의 [주택] 또는 [형]라는 평균으로 기재하지 말로 일 입주가 모집되고 생수학원급신청서의 [주택] 또는 [형]라는 평균으로 기재하여 불어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성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 순위 청약점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청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는 그가 그는 아마가 마리는데... - (~3수수) 및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천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개12수위 당첨자)한

• 1~3~수의 및 특발균급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게안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시살이 금용결체원에 통보되고 참약통장의 채사용이 불개 (소수) 당첨자)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급관성 이후에는 어때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점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수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기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가나, 이외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 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증명서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및 창약통장 채사용이 불가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중인의 명화대신 넓이묘시 법정 단위인 제료이터(제)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m) X 0.3025 또는 형별면적(m) ÷ 3.3058)
• 공유유대에 대한 지전공부 경리가 입주자경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동기시 대자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유자에 대한 지전공부 경리가 입주자경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동기시 대자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하가 함의 조건에 때만 다시 대 정당기가 설치될 수 있음.
• 시공 중 문화재 발경이 필요한 유적이 발꼽될 시 발골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안해 입주가 지연될 시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간대체상치 기계전기신 급세기가, 소크리로 및 쓰레기 본리수가와 위치에 때다리 일본세대는 배서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건본주목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 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건본주택 내무를 촬영하여 보관함 예정임.
• 건본주목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미갑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난 동등이상의 생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사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결 수 있음.

(전문부국 및 자네이 프로마(프로마 BBL - 18 Man) 생생이 비접 수 있다. 생생이 비접 수 있음. 건보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시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건보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질 움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건보주택, 팬먼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있음.
• 카글로그 등 각후 안체물에 삽입된 광역처다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도, 단지대통) 각 주택형발 합체평먼도 및 단위세대 평먼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살제 사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연형용 시공부단 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통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시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하인 단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건본주택의 연형용 시공부단 보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통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시에서 연결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하인도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숙한 총 및 형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건변주택을 참고비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황위인데리어, 부동산 중계 등는 당시와 전혀 무관한 사항입.
• 단점에 약 수한 현영 및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당시에 서면(주민통목포함)통보하시기 바람.
• 임작에상사기는 공정에 따라 반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임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보존동기 및 이전등기는 임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한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나는 재정경제와 보스 제공세계부 교시 제2005~2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등은 임장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근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않기로 함

- 본 이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사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이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이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악간의 처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동독일 경우에는 계약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기본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속시하여 계약에 임하기 바람.

- 판매시설은 병도의 불인시설에며, 공동주택단기와 별도 구획을 하므로, 향후 각 대자기분에 때문 대자분호을 요청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및 바닥재 가격, 인테리어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계획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흥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세대의 박국니 사용 및 오취시 사용 등이 박생화 수 있음.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르 | McB. *비화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확정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발코니는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로 인해 백체두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대피 국고학교학교 장갑 시구기 발 발리 복 정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는 기통식 구조로 단위세대 내부의 기본 벽체는 건식벽으로 시공됩니다. • 발리니상시 및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야 함. • 발리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단역보험에야 함

납부하다야 함. 일부 주기동 옥상층 및 저총부의 경우 삼가시설의 공조기계실(실외기동), 냉각탑 등에 의해 소용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광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여, 시공성의 문제로 알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능하며 미확장세대의 발코니삿시 및 인테리어공시는 준공 후 압주자 본인이 설치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러구도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채별될 수 있으므로 잊지하시기 버럽니다.
- 계약전 시압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주자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아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 사무소의 지도 가동에 따라야 함

사무스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

- 단지내 판매시설의 준공 및 입주시기는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다를 수 있음.

- 외부장호 다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풍동 실험 결과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장호 다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풍동 실험 결과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아메노을 외부청호는 내용암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계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사업유리, 창물에 일부 변경 본자 18을 수 있음.

- 판매시설 내 복도는 보행자 동료로 함시 개발될 수 있음.

- 보 만대로시 되 시부도는 보행자 동료로 함시 개발될 수 있음.

- 본 반대로의 시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들의 변경, 향·충에 따라 일조권, 환경된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관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반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들의 변경, 향·충에 따라 일조권, 환경된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관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반지는 한경수업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반지의 의본 및 생작하는 대회에 대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에는 소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북축 보통공간(3,5216분억의30,39평방이타)에 대하여 도봉구원을 지상권자로 설정하기로 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반지의 사업적인 자공보이 가장 보다는 자꾸인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인접대지의 건물(항후 신축 포함)과 도로에 의해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관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 건국인의 기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시공자: 주식회사 한양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인천 주택 1978-0001) ■ 시행자: 도봉시장 정비사업조합 (법인번호: 264371-0003928)

■ 사이버 모델하우스: www.hydobong.co.kr■ 견본주택위치 및 분양만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0-4 (☎ 1588-3465)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괴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